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

2011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2일 양준욱 의원외 11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1년 2월 22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양준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환경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기존의 3개에서 4개로 확대 개편하여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서울시환경정책위원회(환경 보전자문회의)의 기능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에 기후변화,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환경기본조례에서 기능이 이관된 환경보전계획, 시 환경기준설정,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5호~제9호)

○ 신설된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명칭 조례에 반영(안 제8조 제3호~제4호)

○ 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의 세부 기능을 조례 신설(안 제16조의 3, 제16조의 4)

○ 시민·기업협력 관련 사항을 조문에서 삭제(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청수)

○ 서울시에서는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정책자문 및 실천력을 갖춘 위원회를 표방하면서, 조례상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개편하여 운영해 왔음

〈표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직개편 현황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기획조정위원회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 〈신 설〉 〈신 설〉	기획조정위원회 서울행동21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폐 지〉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또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본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위나 명칭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시민참여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11.05)
③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11.0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 이유

○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위나 명칭 등을 반영하는 등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이관된 환경보전 관련 자문내용을 함축하여 기술하고,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의 참여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조례안의 체계에 맞추어 일부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59

제안연월일 : 2011년 2월 22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 이유
   ○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위나 명칭 등을 반영하는 등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이관된 환경보전 관련 자문내용을 함축하여 기술하고,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의 참여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조례안의 체계에 맞추어 일부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함.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제명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제9호를 삭제한다.

7.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문

안 제3조제1항 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기획관、정책기획관、기후변화기획관、주택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푸른도시국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기획관"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 3인"을 "부위원장 4인"으로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를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를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교육·홍보"를 삭제한다.

안 제12조 중 "사무담당위원에게"를 "위원회 간사"로, 안 제14조제2항 중 "환경행정담당관"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며, 안 제16조, 안 제16조의 2, 안 제16조의 4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 ---------- ---------- ---------- ---------- ---------- ---------- ---------- ---------- ----------.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 ----------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 ---------- ---------- ---------- ---------- ---------- ---------- ----------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 --------.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1.~2.(개정안과 같음)
3.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 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	3. 서울행동21-------- ---------- ----------	3.(개정안과 같음)

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	
4.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시민·기업의 참여유도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지원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7.「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문
<신 설>	8. 시 환경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삭 제>**
<신 설>	9.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심의	**<삭 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1. ----------	1. ----------

다) 경쟁력강화본부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국장・정책기획관・환경기획관・주택국장	---------- 경제진흥본부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기획관・정책기획관・기후변화기획관・주택국장	--------- 맑은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푸른도시국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기획관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4인**과 감사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이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 서울행동21 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이하 ----------.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

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시민단체, 기업등과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환경개선·보전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홍보, 환경 감시활동, 의제21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 서울행동21 실천분과위원회 : 서울행동21 ----------	1.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 서울행동21---------- -------, 환경 감시활동, 의제21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이행점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제시 등	2.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	2. (개정안과 같음)
3. 시민·기업협력위원회 : 시민과 기업간의	3. 서울기후행동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관련	3. (개정안과 같음)

협력기반 구축 및 환경보존프로그램 공동참여, 기업의 친환경적 기술개발 및 시민의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촉진,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유도	정책대안제시,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시민·기업의 참여유도, 기후변화관련 대내·외 활동	
<신 설>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환경교육 및 홍보	4.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의안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0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안제출) (현행과 같음)	제12조(의안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0일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지속가능성 평가)	제16조(지속가능성 평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의2(서울의제 21 실천 등)	제16조의2(서울행동21실천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6조의3(서울기후행동) ① 위원회는 시민과 기업행정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후변화관련 실천프로그램을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회는 기후변화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변화관련 대내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의4(환경교육) ① 위원회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및 사회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지원하고 실천하며 환경교육에 힘쓴다.	<삭 제>
제17조(시민·기업 협력)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로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의제 21"을 "서울행동2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시민·기업의 참여유도
6.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지원 등
7.「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문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쟁력강화본부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국장·정책기획관·환경기획관·주택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푸른도시국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기획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를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 서울의제21"을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 서울행동2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 기후변화관련 정책대안제시,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모델 개

발 및 시민·기업의 참여유도, 기후변화관련 대내·외 활동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환경교육 및 홍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 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3. **서울행동21**----------
4.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	〈삭 제〉
〈신 설〉	**5.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시민·기업의 참여유도**
〈신 설〉	**6.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지원 등**
〈신 설〉	**7.「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문**

제3조(구성) ① (생 략)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경쟁력강화본부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국장、정책기획관、환경기획관、주택국장**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맑은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푸른도시국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기획관**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이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중에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4인**과 감사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서울행동21 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이하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 의제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시민단체, 기업등과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환경개선、보전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홍보**, 환경감시활동, 의제21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서울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 서울행동21**----------, 환경 감시활동, 의제21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이행점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제시 등	2.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
3. 시민·기업협력위원회 : 시민과 기업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환경보존프로그램 공동참여, 기업의 친환경적 기술개발 및 시민의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촉진,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유도	3.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 : 기후변화관련 정책대안제시,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시민·기업의 참여유도, 기후변화관련 대내·외 활동
〈신 설〉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환경교육 및 홍보
제12조(의안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0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안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0일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지속가능성 평가)	〈삭 제〉
제16조의2(서울의제 21 실천 등)	〈삭 제〉
제17조(시민·기업 협력)	〈삭 제〉